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서호*

〈目 次〉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요 약〉

형사사법(刑事司法)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역할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민주적 질서와 법치 수호에 있어서 엄중한 공정성 및 청렴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공직부패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부패통제 측면, 업무환경 측면, 공직자 인적 측면 순으로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형사정의의 이념과 연계해 각 부패 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올바른 형사정의의 이념을 반영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형사사법기관, 부패 인식, 공직부패 유발요인, 반부패 정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shlzzang11@skku.edu)

논문접수일(2024.10.22), 수정일(2024.11.21), 게재확정일(2024.12.2)

I. 서론

인간은 복합적인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각종 근본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정의라는 가치를 통해 진실에 마주한다. 이에 ‘형사정의(刑事正義)’는 범죄에 대한 처우와 집행 및 사회질서를 모색하는 일련의 절차적 정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형사사법¹⁾은 제도화된 행정 가치를 통해 정의 구현과 각종 범죄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예부터 형사사법의 실현은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질서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통치 작용으로서 기능한 바, 각종 행정제도의 합목적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범죄 및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안으로 올바른 사회질서의 확립과 엄격성·확실성에 기반한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정치적 함의는 매우 가변적이다. 한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인 정치적 상황 및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그 역할과 집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경종(警鐘)은 주권국가에서 시사하는 함의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전술한 형사사법기관의 근본적 역할과 사회·정치적 함의를 상기했을 때 바람직한 ‘사법 정의’²⁾의 형태 및 한 사회에서 보호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 담론은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의 영역은 국가 역할의 중추적·배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가 독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할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법치 사회에서 사회안전과 범죄문제를 적법절차에 따라 일률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회일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민주이념에 부합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역할과 함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사법의 적용이 적법성·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공공의 질서와 부합할 수

1) ‘형사사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일련의 절차적 정의를 통해 범죄통제를 피하고자 하는 과학적 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사법을 하나의 ‘전체(system)’로서 파악하는 것이 인간 상호작용의 산물인 범죄문제의 대응에 대한 통합적·유기적 역할을 실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을 부정(不正)에 대한 정의(正義)의 싸움으로 본다면 또는 악(惡)에 대한 선(善)의 싸움으로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단순화 시킨다면 좀처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최선우, 2015).

2) ‘사법정의’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정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즉, 각자가 주장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의 ‘옳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저마다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래 기대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이다.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범죄 문제의 통제에 있으며, 범죄문제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본다면 ‘형사정의’의 가치 상대성은 역시 본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향유하는 형사사법체계(기관)가 청렴하지 못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위 재난적(災難的)인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예상된다. 반(反)청렴한 형사사법의 적용 및 부패(腐敗)적 문제는 국가에 대한 신뢰 감소 및 사회 안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할 것인바, 부패적 상황을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담론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2019-2022년 사이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 개정 등 변화를 겪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설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전체적인 부패범죄 점검하고 현행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반부패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성을 갖춘다. 이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사회질서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 현행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논의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부패란 영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가?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선 그 일면에 발현될 수 있는 부조리는 당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며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영속적인 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패의 지속적인 발현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포괄적 신뢰를 하락시켜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와해와 사회의 각 조직에서 파괴적 양상을 가져온다. 생각건대, 중요한 명제는 부패적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언제나 실천적이며 당위성을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은 근본적으로 ‘통제적’ 관점에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부패 척결에 높은 책임을 지는 바, 기타 행정 분야와 다른 차원 수준의 청렴과 반부패 의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정의의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정치적 함의를 논의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초점을 두어 부패 유발요인과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질서 수립을 위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바른 ‘형사정의’의 이념을 반영한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을 도출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고찰

1. 형사사법기관의 특성

1) 역할과 책임

근대국가 이후 국가는 통치원리의 하나로서 ‘인(人)의 지배’나 ‘폭력(暴力)의 지배’가 아닌

‘법(法)의 지배’³⁾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최선우, 2017). 이는 ‘법치’를 근본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질서 확보에 이념적 함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형사사법은 국정 운영의 방편으로서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공안전’과 ‘사회적 가치’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정의 이념을 제도적·법적으로 구현된 체계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법의 보호를 위한 높은 책임을 통해 사회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함의를 갖는다. 즉,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본위주이면서도 정확한 법 집행과 적용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혁, 2014).

근대 이전의 규문주의 형사사법에서 근대 이후의 탄핵주의 형사사법⁵⁾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본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질서와 부합하기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최선우, 2015). 이는 개인(피고)도 국가 소송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형사소송의 민주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구조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정의의 이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도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법익을 수호하는 것에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이에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표성수, 2017), 이들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이 있으며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절차적 정의의 실현기관이라는 점에서 고유기능 수행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우선 경찰은 수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각종 범죄 예방 기능을 담당하며(경찰법 제3조) 공공안전 및 각종 사회질서 확보에 대한 중추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 및 형벌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검찰청법 제4조),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등 ‘사법 적극주의’의 요청에 적극 임하고 있는 바, 기존 형사재판 중심의 역할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의 개입이 진행되고 있다. 즉, 경찰의 검거 및 범죄예방 업무는 발생한 범죄의 양에 따라 영향을 받고, 검사의 기소 여부는 검거된 범죄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법원의 양형 업무

-
- 3) ‘법의 지배’는 지배 권력의 정당성과 체제 유지의 도구적 측면이 아닌 권력의 자의와 부패를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법원리’다.
 - 4)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의미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침해행위이며 그 내용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용식, 2012).
 - 5) 탄핵주의 형사사법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즉,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적용되는 법 해석적 작용을 일컫는다. 탄핵주의는 다시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로 구분되는 바, 현행 형사소송법(제246조)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범죄의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윤옥경, 2014).

즉, 위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실제적 진실발견, 법치주의 확립 및 적정절차의 확보 등에 관한 형사사법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⁶⁾ 이 같은 상호 유기적 체계는 사회안전에 대한 공유된 책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견제나 감시 없이 권한과 기능을 독자적으로 전횡하거나 형사사법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선 직무상의 남용이 있을 경우 초래될 폐해는 소위 ‘부패적’인 것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 국가의 법치의 실현과 민주적 가치의 확보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형사정의의 이념 손상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공정성·청렴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국민의 지지(public support)’를 잃게 만들어 공적 정당성을 위협한다(신동선, 오성수, 2024). 이에 형사사법기관의 부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와 사회질서의 와해를 가져와 사회 일반의 보편적 정당성을 위협한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사회의 안전과 질서 확보가 막중한 책임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그러한 조건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형사정책 구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 일반과 개인의 안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주요한 선결 조건이 된다. 반면, 이러한 작용이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면 부패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책임성에 대한 고유의 차별성·엄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위해 부패적 요인을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법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논의는 사회 일반의 질서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2) 부패 특성 검토

부패는 사회·정치 현상의 기본적 부산물로서 한 사회 및 공동체가 직면한 배경에 따라 가변적 특성을 내포한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의 부패 특성도 직면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실제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사법의 핵심 이념으로서 논의되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실제적 진실을 원하지 않는 자에 의해 방해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이원상, 2024). 즉, ‘진실’이 자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6) 이 같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묘사는 소위 ‘합의 모델(Consensus Model)’로서 범죄예방과 범죄통제라는 전체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법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것으로 이는 형사사법의 합목적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적 진실의 왜곡 가능성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서 근본적인 부패 발현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관의 부패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을 적용·검토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바, 수사, 공판 및 집행절차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찰, 검사 등이 행위 주체가 된다. 예컨대,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 및 법원의 재판거래 행위 등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및 부패적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수사, 공판 등과 같은 일련의 형사사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 검사 등이 행하는 형사 절차의 왜곡 행위는 현행 법률(형법 등)로 일부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 법관 등이 행하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형사사법체계나 실무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다(이원상, 2024). 이 같은 문제는 수사대상이 곧 수사기관이 될 수 있어 권한의 재량 남용 및 부패적 현상에 대한 통제·처벌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형사사법 부패의 기회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은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특히,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최선우, 2006). 물론, 형벌법규 자체가 입법 과정을 통해 규정되기에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지나친 정치적 결탁은 일부 소수집단의 이해관계 및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소수의 지배 권력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형사사법을 이용할 수 있다.⁷⁾ 즉, 피상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주창하면서도 지배 권력의 영속성을 위해 각종 절차와 수단을 통해 형사사법의 자기 파괴적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⁸⁾ 따라서 근대 형사사법제도는 형사 피의자 및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그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새로운 범죄자들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고 권력 집단은 이것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최선우, 2006). 이는 일부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추구하면서 지배 권력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검찰은 관념적인 정의와 윤리성을 추구하기보다 지배계급이 원하는 특정사건 및 특정인의 체포와 유죄 입증에 보다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것이다(최선우, 2017). 최근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자신의 막강한 수사권(검찰권 등) 및 기소권을 이용해 권력을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행사했다.⁹⁾ 이는 대통령 및 그 측근 비리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

7) 이와 관련, 김봉수(2020)는 현재 검찰의 부패적 현상과 정치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로지 검찰조직 자체에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8)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도 특정 지배집단은 늘 존재하는 것이며, 이들 집단에 의한 형사사법의 정치화 및 자의적 운용은 미국, 영국 등을 막론하고 발견할 수 있다(King, Michael, 2023).

9) 소위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봐주기식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수사권 남용사례가 부지기수였

부패 대응에 있어서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나아가 특정 정치집단에게는 유리하게 수사하면서 그 반대세력에 대해선 필요 이상의 잣대를 통해 엄격한 수사원칙을 강조하여 수사방식의 공정성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김병수, 2020). 이러한 수사 및 법 적용 행태는 소위 ‘편파 수사’라는 지적을 야기했으며, 2019년에서 2022년에 이르기까지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흐름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¹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그 당위성과 더불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 없는 오래된 논쟁의 영역이다(김현수, 2020). 이에 2022. 5. 9.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당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가변적인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적 문제는 늘 주요한 의제가 된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법 집행 기관으로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특성 및 개혁 흐름은 반부패와 청렴을 갈망하는 국민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2.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

1) 부패 인식 검토의 필요성

형사사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소정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사회질서를 확보하는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칙과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규범적 성격의 형사사법과 실제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형사절차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확실성을 그 본질로 하는 형사사법에 대한 함의가 개념적(概念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객관적 상수(constant)로서의 형사사법 원

고, 기소권의 불공정·편파적 행사도 다수사례에서 목도되었다(서보화, 2021).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의 위험성이 규제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절차 내에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형사사법 부패의 주요한 축을 구성할 수 있다.

10) 2016년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가 문제된 후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강의를 밝히기도 했다(장영수, 2020).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권력기관 개편안, 같은 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수사권 조정법안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에 성공하였다(서보화, 2020).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4호)도 유사한 과정으로 2019년 12월 30일에 입법에 성공, 2021년 3월부터 가동되었다. 이 같은 절차는 형사사법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칙과 주관적 변수(variable)로서의 형사사법 인식간의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차유정, 노성훈, 2022). 이 같은 규범 원칙과 인식간의 차이는 ‘형사정의’를 조망하는 다원화된 관점과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¹¹⁾

이 같은 ‘형사정의’에 대한 인식의 가변성은 형사사법의 공정한 법 집행이 개인의 인식에 따라 공정 대 불공정의 스펙트럼의 연속선 상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사사법의 ‘공정성(公正性)’이라 함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회질서와 법익을 수호하는 ‘형사정의’의 핵심가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따라서 형사사법 작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개인의 법익 수호가 형평(fairness)과 정당(justice)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반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법 집행에 대한 불신과 공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생긴다. 즉, 형사사법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사회의 혼란과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다. 이는 곧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 작용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서 소위 ‘부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Sherman(1993)은 법 집행이 불공정할 경우 법률 적용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져 각종 법치 구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공정성 및 부패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한 국가의 존재론적 정당성 존부(存否)를 나타낼 수 있는 근본적 문제이지 아닐 수 없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은 여타의 행정기관과는 차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앞서 논의했듯 법치주의 근간을 지탱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공공질서의 확립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막중하다. 이 같은 책임이 국민적 관점에서 부패적으로 인식될 경우 소위 ‘재난적’일 수 있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에 있는 형사사법 절차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바,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 논의는 필수적 요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은 가변적인 것이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며 복합적인 형성원인 및 사상적 배경을 전제해 명확한 부패 인식 원인론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다. 더욱이, 부패적 문제는 가시적 지표로서 표출되는 형식이 아닌 내부적으로 발현되는 근본적 속성을 갖춘 바, 부패에 관한 인식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원인론을 설명하는 과정은 첨예한 논의와 담론을 전제

11) 이와 관련, Hagan, Albonetti(1982)는 형사사법의 의미는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가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형법의 구체적인 집행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법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상징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상징과 법 원칙이 법률적 개념의 관점과 일반인의 인식 측면에서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담론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것으로서 부패 인식론(corruption epistemology)에 관한 논의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객관적 지표로서 부패방지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제안에 한계가 있다. 즉, 선형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논의의 지속성과 개념적 담론을 전제하고 있어 특정 기관(상황)에 대한 시의성을 갖춘 명확한 접근이 어렵다(이서호 외, 2024).

따라서, 기존의 정성적·개념적 방식을 통한 부패 인식에 관한 원인론을 탐구하는 것보다 정량적 차원에서 부패 인식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반부패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능률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인식은 개인의 주관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부패적 현상보다 더욱 과대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오류가 한계로서 제시될 수 있으나(Razafindrakoto, Roubaud, 2006), 부패적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고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된다. 부패(인식)에 대한 원인은 개인의 윤리·도덕적 측면, 행정제도 및 문화적 견지 등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시각이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즉,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 윤리적 문제, 국가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김보은, 2018), 각 요인이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공식(기관)의 성격과 행정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 또는 복합적일 수 있을 것이다.

2) 부패 인식에 대한 예측요인

행정·정책에 따라 차별적 업무논리, 정치 및 권력관계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기관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기인한 부패의 발생구조 및 원인론도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송성화(2022)는 행정분야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가치체계와 문화, 정치과정과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의 차이를 보여 공식부패가 발생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한다. 즉, 부패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산물이기에 부패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며(이영균, 2003) 행정기관의 역할 책임성에 따라 부패 인식을 구성하는 원인도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적 문제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부패 인식에 대한 원인은 차별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형사사법 작용이 우리 사회에 작용하는 영향이 매우 포괄적이고 기대하는 수준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한다. 무엇보다 당위적·규범적 성격의 형사사법과는 다른 한 축으로서 그 구현 원리와 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공정과 형사정의에 대한 개별 주체의 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예측하고자 하는 부패 원인론에 있어선 총체적

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부패를 구성할 수 있는 공직자 개인의 내·외적 요인이 형사정의에 대한 이념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반부패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안정된 사회질서 수립을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청렴 정책을 위한 논의로 전개되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 분야에 따라 관련된 가치체계, 문화, 집행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및 반부패 정책의 방향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송성화, 2022). 즉, 각 기관에 따른 차별적 부패 인식론을 예상할 수 있는 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정의의 관점을 반영한 반부패 시책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적으로 검토된 공직부패 유발요인으로서 공직자 개인적(인적), 행정 제도적, 업무 환경적, 부패 통제적 측면(김철식, 2012; 송성화, 2022; 조일형 외, 2014; 최예나 2021, 홍상우 외, 2023)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 같은 요인들 특정 행정분야(경찰, 국방 등)의 부패 원인을 분석하였던 연구에서도 부패 유발요인으로 간주되었다(사공영호, 2003; 윤성혜, 2017). 특히, 특정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은 공직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김준석 외, 2011) 공직 전반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패 원인론 역시 행정분야별(경찰, 법무 등) 부패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영향력도 차별적일 수 있다. 나아가 부패 인식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요인 등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왕재선, 2019)으로 기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다. 즉, 개인(공직자)의 내·외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부패 유발요인 검토는 형사정의의 바라보는 다차원적 속성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은 법률 집행을 통해 사법 정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타 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성, 청렴성 및 엄격성 등이 요구되는 바, 다차원적 부패 인식 원인론은 형사사법에 기대되는 복합적인 공직 가치와도 높은 연계를 지닌다.

이에 선행적으로 검토되는 부패 유발요인을 살펴보자면 우선 부패에 대한 개인적 측면의 요인은 공무원 개인의 행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송성화, 2022). 이는 자질, 본성 등에 관한 것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을 강조한다. 즉, 부패행위는 개인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낮은 윤리의식으로 발생하게 된다(조일형 외, 2014; 조운행, 2005). 제도적 측면의 요인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호한 행정기준 및 행정규제의 증가 등으로 부패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고길곤, 조수연(2017)은 행정과정의 복잡성·모호성 등으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남용의 기회가 증가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업무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은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로서 온정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공직자의 일탈을 가져온다고 보는 바, 사회에 만연한 전통적 관습과 정의적 인간관계에 주목한다(고길곤, 조수

연, 2017; 김보은, 2018). 즉, 해당 사회에서 오랜 기간 존속된 관례(관습)가 부패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부패통제 측면의 요인은 행정 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시민의 행정참여 및 감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부패를 적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통제·감시의 역할 미비가 해당 기관 및 개인의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은 부패 통제장치가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일형 외 2014). 이 같은 각 부패 유발요인들은 형사사법 업무의 전문성, 요구되는 청렴성 수준 및 폐쇄적인 업무환경 등 형사정의의 다차원적 이념과 높은 연계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공직자 개인의 청렴(윤리)이 요구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 기반의 엄정성·확실성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형사 절차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유연한 업무적 여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등)은 각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고 법 집행과정(수사 및 법무행정)에서 상호간의 협조와 통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예상케 한다.

지금껏 행정 분야별로 부패 인식에 대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송성화, 2022; 사공영호, 2003; 윤성혜 2017) 및 행정기관(정부)을 단일변수로서 부패 인식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김보은, 2018; 이호규, 고대유, 2022; 홍상우 외, 2023; 조일형 외, 2015), 형사사법기관을 단일 대상으로 하여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적·사법적 함의와 바람직한 사회적 경종(警鐘)을 상기했을 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와 그 인식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국민적 의제가 된다. 한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가 보호되는 가는 국가(형사사법기관) 선택의 문제이며 주권(主權)을 가진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높은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된 「2022 정부부처 부패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¹²⁾ 본 조사는 국내 정부부처의 부패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근절방안

모색 및 국정 전반의 부패실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품제공의 보편성, 사회적 심각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부패의 만연 정도, 부패유발 주체, 금품제공 계기, 금품제공 경험 및 규모와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고 있다(고길곤, 조수연, 2017). 해당 자료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수집되었다. 해당 연도는 일련의 형사사법 관련 개혁이 종료되고 개정된 법률사항이 시행되는 초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그간의 의회 및 행정부 등에서 논의되어 온 개편된 형사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의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단년도 자료라는 점에서 일련의 형사 법률 개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사법의 정착 및 개정 취지에 따른 기관간의 견제·균형의 원리 등에 입각한 반부패 방향성을 실천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2022년 사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60년 넘게 논의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즉, 검찰개혁과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변화 요청을 받아들여 새롭게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선종수, 2024). 이에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 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새로운 반부패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400명과 5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즉, 응답자는 국내 기업체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¹³⁾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공직 환경에 대한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 있는 자들로 적합한 표본이 된다.¹⁴⁾

2. 주요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공직부패 유발요인으로서 개인(공직자)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인

12)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패 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계속 과제로서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통해 구성하여 정책 근거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3) 국가의 청렴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도 기업경영자 및 전문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 되는 부패로 측정한다.

14)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업가로서 경제활동 및 다양한 공공부문의 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부패를 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닐 수 있다(김보은, 2018).

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를 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인지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반영하여 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인적, 부패통제 측면으로 구분했다.¹⁵⁾ 각 측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환경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1).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2).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1).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 규제’, ‘2). 행정 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공직자 인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업무처리 재량’으로 각각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은 ‘1).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2).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3)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세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들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측면에 대한 공직부패의 유발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이다. 즉, 시민의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경찰, 검찰 및 법원에 대한 부패 인식으로서 형사사법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할 수 있는 청렴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법원)에 한정했다.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1=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6=매우 심각하다’)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통상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으로 구성된다. 고길곤, 조수연(2017)은 개인이 지닌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고, Melgar et al(2010)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특성을 부패 인

15)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도 공직부패 유발요인을 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인적, 부패통제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했다.

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 성별이 부패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진종순, 서성아, 2007)와 고연령자, 저학력자 및 고소득자일수록 부패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김용철, 윤종철, 2004)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부패적 속성(인식)과 높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은 ‘남성=1, 여성=0’,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로 코딩했다. 최종학력은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석사)졸 이상’, 가구소득은 ‘1=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7=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9=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0=900만원 이상’으로 코딩했다.

3. 분석방법

형사사법기관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이에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차원의 청렴과 반부패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공직사회에 대한 제도, 사회, 개인(인적)적 측면 등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을 통해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각 요인간의 영향력 수준에 따른 반부패·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23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실시했다. 우선 기초통계분석 통해 각 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검토했으며 요인분석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나아가 상관계수를 통해 주요 변인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과적 추론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별로 살펴보았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예측변인으로 구성된 세트가 두 개 이상일 때 각 세트가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제3자(통제변인) 예측변인으로 구성된 세트를 통제했을 때 특정 세트가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고유한 영향력(설명력)을 차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단계 모형에선 통상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을 투입해 통제하였으며, 2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인(공직부패 유발요인)을 투입함으로써 각 모형에 따른 설명력 차이와 각 독립변인들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검토했다.

IV. 연구결과

1. 기초 통계량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의 경우 업무환경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공직자 인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및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모두 평균이 중간값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직에 대한 부패 원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속변인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도 평균이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경찰,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정의 및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기관에 대한 청렴 인식 수준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바, 형사사법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1> 기초 통계량

(N=1000)

변인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통제변인	성별(남성=1)	0	1	.5	.46	.498
	연령	1	5	2.5	3.33	1.226
	학력	1	5	2.5	3.20	1.005
	가구소득	1	10	5	5.31	2.171
독립변인	업무환경	2	12	7	8.706	1.793
	행정제도	2	12	7	8.512	1.939
	공직자 인적	2	12	7	8.569	2.042
	부패통제	3	18	10.5	12.728	2.980
종속변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	3	18	10.5	12.047	3.485

2. 주요변인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주요변인들(독립 및 종속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 및 모델적합도 분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CFA는 연구자의 가설을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모형화가 가능하며 적합도(부합도) 측면에서 변인간의 가설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FA는 측정모델분석을 활용하여 모델적합도가 확보된 후 추가적으

로 집중타당도 검증을 거치게 되는 바, 구체적인 모델적합지수는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 이하 AFI)와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 이하 IFI)를 활용하였다. 본 모형의 AFI는 SRMR=.037, RMSEA=.081(.074~.089),¹⁶⁾ IFI는 CFI=.955, TLI=.933로 각각 나타났다.¹⁷⁾ 표준화요인부하량값(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도 .5를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어서 집중타당도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¹⁹⁾

(N=1000)

				RMSEA 90% CI				
CFI		TLI		SRMR		RMSEA		
				Lower		Upper		
.955		.933		.037		.081		
				.074		.089		
요인	indicator	estimate	SE	Z	P	β	Cron. α	
독립 변인	X1	X1-1	.639	.033	19.3	<.001	.631	.664
		X1-2	.835	.035	23.8	<.001	.789	
	X2	X2-1	.880	.031	28.1	<.001	.818	.814
		X2-2	.868	.029	29.0	<.001	.840	
	X3	X3-1	.923	.030	30.4	<.001	.845	.834
		X3-2	.941	.031	30.5	<.001	.846	
	X4	X4-1	.813	.033	25.0	<.001	.723	.834
		X4-2	.983	.031	32.2	<.001	.869	
		X4-3	.952	.033	29.0	<.001	.805	
종속 변인	Y	Y-1	1.118	.039	32.1	<.001	.857	.871
		Y-2	1.206	.035	34.4	<.001	.900	
		Y-3	.938	.036	26.3	<.001	.745	

16) 표본의 공분산행렬과 추정공분산행렬 사이의 간극을 소위 오차행렬이라고 하는 바, 이 차이가 0에 근접할 수록 두 공분산행렬의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SRMR과 RMSEA가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SRMR은 .5이하, RMSEA는 .1 이하이면 적합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17) 증분적합도지수(CFI, TLI)는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모델적합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18)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표준화 값이 .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모델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19) 기존에 논의된 척도 문항을 중심으로 변인을 구성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성 및 구성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즉,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이 이론적·선행적으로 미리 검토되었기에 잠재변수와 측정요인간의 관계를 파악 및 확인하는 작업이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변인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전반적인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과 공직자 인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r=.657, p<.01$),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r=.592, p<.01$) 순으로 높은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의 경우 부패 인식 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공직부패의 내부 원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은 공직부패 유발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바, 부패통제($r=.470, p<.01$), 공직자 인적($r=.388, p<.01$), 업무환경($r=.349, p<.01$), 행정제도($r=.322, p<.01$) 순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적으로 검토되는 기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높은 개연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전(全) 공직부패 유발요인간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상호간의 높은 통찰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⁰⁾ 즉, 부패 인식에 대한 예측 및 통찰 가능성을 통해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부패통제 측면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 타 공직부패 유발요인보다 높은 인과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관성은 전 변인에 있어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투입된 변인간의 전반적인 상관계수는 .8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N=1000)

구분		1.	2.	3.	4.	5.
독립변인	1. 업무환경	1				
	2. 행정제도	.542**	1			
	3. 공직자 인적	.528**	.549**	1		
	4. 부패통제	.543**	.592**	.657**	1	
종속변인	5.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	.349**	.322**	.388**	.470**	1

* $p<.05$, ** $p<.01$, (two-ties)

20) 하지만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발견된 상관관계에 관한 추론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으로 넘어가는 것이다(황태연 외, 2019). 즉,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조건으로서 정교한 인과적 추론을 위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결과

외생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모형1]은 외생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고, [모형2]는 독립변인인 공직부패 유발요인(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인적, 부패통제)을 추가로 투입하여 외생변인을 통제한 후에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모형1]은 $F=7.656(p<.001)$, [모형2]는 $F=45.071(p<.001)$ 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R제곱 F변화량 ($F=80.052$)에 따른 유의확률 $p=.000$ 으로 외생변인 투입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을 투입한 [모형2]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β)에 따른 설명력에 따르면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beta=.325$), 업무환경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beta=.113$), 공직자 인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beta=.108$)순으로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패통제, 업무환경 및 공직자(개인) 인적 측면에 대한 부패를 높게 인지할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이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패통제, 업무적 환경 및 개인의 인적 등 부패 원인을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부패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필요성과 부합한다. 특히, 부패통제 측면의 경우 타 공직부패 유발요인보다 높은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각 형사 집행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바람직한 형사정의의 이념을 확보하고 부패 억제에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민간의 개입(시민참여)을 통한 형사사법 작용의 감시·통제의 활성화도 정교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시·견제 수단으로서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주요한 반부패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갖춘 현행 행정제도(형사사법제도 등)는 그 제도적 작용의 엄중성·확실성이 요구되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절차적 메커니즘이 형사사법 업무에 대한 투명성·청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규범적 측면을 반영한 형사소송 및 각종

행정절차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선 법(행정) 집행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며 편중될 수 있는 전문화된 자의성은 부패적 요소와 높은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식적 견지를 상쇄하기 위해선 제도적·규범적 관점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간의 인과적 관계를 형사사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공정성 등과 연계하여 정교한 논의 전개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실증검토가 필요하다.

〈표 4〉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결과

(N=1000)

변수	[모형1]			[모형2]			
	B	β	t(p)	B	β	t(p)	
(상수)	11.439		17.863***	3.442		4.660	
통제 변인	성(남성=1)	-.945	-.135	-4.227***	-.837	-.120	-4.289***
	연령	-.082	0.029	-.817	-.183	-.064	-2.064*
	최종학력	.359	.104	2.814**	.206	.059	1.843
	가구소득	.030	.019	.585	.070	.044	1.549
독립 변인	업무환경			.219	.113	3.215**	
	행정제도			.028	.015	.416	
	공직자 인적			.185	.108	2.836**	
	부패통제			.380	.325	8.184***	
F(p)	7.656***			45.071***			
R^2	.030			.267			
adj. R^2	.026			.261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부패문제의 척결과 관리는 청렴한 사회를 위한 국가적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반부패 시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정 관리(Governance)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 법치(法治)는 헌법 가치로서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원리'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는 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법치의 올바른 구현과 신뢰가 필요하다. 이는 각 사회집단의 균형과 통제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하며 공정한 사회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적·제도적 합

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치 구현에 높은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인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은 한 국가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형사 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타 행정(공공)기관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부패 인식에 미치는 부패 유발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은 부패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업무환경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공직자 인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 순으로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을 예측하고자 할 때, 부패에 대한 개인의 내·외적 변수가 모두 유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부패 인식의 원인론에 대한 총체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부패 통제적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가장 높은 예측 설명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위 기관들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적 작용을 통해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가 기능적 권력분리에 의한 통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임의적 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다.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본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합리적 사회구성 운영 방식인 바, 법치에 대한 높은 책임을 지는 형사사법기관의 부패 인식에 부패통제 측면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는 일견 타당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각 조직(경찰, 검찰 등)은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형사정의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상 ‘상호 유기적’ 관계 형성은 불가피하다. 즉, 범죄문제의 입건과 수사, 기소와 재판 등 일련의 과정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형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호 연계성을 전제로 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관은 본질적으로 사회 통제의 권력적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바, 조직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갖춘 형사정의의 구현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력적 작용은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권력 유지 수단 및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어 조직간의 유기적 상호관계에서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대표적인 사정(司正)기관으로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통제작용에 대한 제도적·법적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각 기관(부처)간의 통제·감시에만 의존해서는 반부패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형사사법의 민주성을 도모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운영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원리로서 시민참여의 전형적인 작용이 될 수 있어 시민과 경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선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형사사법의 공정성·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건대, 이 같은 민간의 참여는 형사사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춘 공무원들의 업무적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부통제 및 기관간의 견제보다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을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이 이 같은 국가작용(형사사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정의수호와 사회안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내의 만연한 연고·학연주의 등과 같은 집단주의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은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선 각종 이해관계(이익집단)로부터 제한받지 않아야 하며 선처나 특혜 등에 따라 공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복이라는 사명감 이래 사회질서와 바람직한 사법 정의의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공직자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형사정의’ 라는 대 전제 앞에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와 우리 사회의 공정·정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행정제도 측면과 형사사법기관의 부패 인식간의 인과적 메커니즘에 내재된 이론적 불확실성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특정 제도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 및 비가시적 요인은 해당 기관의 부패적 기회의 발현과 높은 개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은 복잡한 형사소송 절차와 첨예한 형법 이론의 논의와 대립에 관한 것으로 ‘형사 제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수반된다. 따라서 행정(형사)제도의 복잡성과 각종 규율과 절차의 비가시성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높은 인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 견지는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민주성이 필요한 일련의 형사사법은 형사 제도에 대한 맹점을 예방할 수 있고 노력 여하에 따른 감시가 가능하다. 즉, 이 같은 논리는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률적 적용과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제도 측면의 공직부패 유발요인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형사제도에 대한 절

차적 타당성과 적법절차의 국민적 수용성이 신뢰할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형성·집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생간건대,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책임지는 형사사법기관은 자의적·재량적 법률 적용을 방지할 형사소송의 절차적 타당성이 갖추었으며, 피의(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체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실천적·이론적 논의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형사사법기관을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한정하여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담당하는 통상적 기관에 한정했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및 다양한 행정기관에 속한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보유한 여타 행정기관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검토를 통해 부패 인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바, 실제 부패를 ‘경험’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패 인식과 경험 간의 체계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는 2022년에 수행된 횡단자료를 활용한 바,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및 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지 않았다. 형사사법 개혁 흐름에 따른 국내의 가변적인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경찰, 검찰 및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충분히 다차원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자료는 형사사법 개혁이 종료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의의 이념을 검토하고 반부패 방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었다. 끝으로 통계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되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²¹⁾에 의한 분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측정된 변수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에 심각한 모순을 안긴다. 하지만 본 설문지는 측정 항목간의 순서를 상이하게 배열함으로써 각 설문의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상당 부분은 해결하고 있으며 각 항목간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분리도 고려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형사사법의 역할과 함의 및 ‘형사정의’의 관점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를 도출한 것에 독자적 의의를 둔다. 형사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그 어느 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반부패 시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부패 척결과 형사정의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21) 연구 모형 내 제 변수를 동일한 방법(예:설문조사)으로 측정할 경우 연구방법론상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오류를 일컫는다. 하지만 많은 실증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실증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방법편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병수. (2020).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5(2):107-121.
- 김보은. (2018). 부패유발요인이 공무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171-199.
- 김봉수. (2020).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교형사법연구」, 22(3): 21-46.
- 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343-371.
- 김진혁. (2014).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나아갈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23(3): 11-33.
- 김철식. (2012).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사회연구」, 2(1):43-76.
- 김현수. (2022).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77):194-226.
- 고길근·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31-56.
- 사공영호. (2002).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4): 75-100.
- 서보학. (2020).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제·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범죄수사학연구」, 6(2): 5-30.
- 서보학. (2021).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중대범죄 전담특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85-121.
- 선종수. (2024).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부패학회보」, 29(1):73-90.
- 송성화. (2022). 행정분야별 부패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정관리연구」, 17(2):35-72.
- 신동선·오성수. (2024).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공공기관의 부패 대응 제도가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감사논집」, 42:79-107
- 윤성혜. (2017). 경찰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6):207-231.
- 이서호·김다솜·홍성우·배수호. (2024).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공성 인식유형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논총」, 62(1):1-24.
- 이용식. (2012).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417-448.
- 이원상. (2024). 형사사법절차의 방해 및 왜곡에 대한 소고-조직적 사법방해 및 권력 결탁적 범죄

곡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85-114.

- 이호규·고대유. (2022).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한국정책구」, 22(2):165-184.
- 왕재선. (2019). 부패인식의 요인 -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15(3):1-24.
- 표성수. (2017). 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법조」, 66(2): 265-307.
- 장영수. (2020).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고려법학」, (96):4 9-80.
- 조운행. (2005).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전문경영인연구」, 8(1):119-15 1.
- 조일형·이현철·권기현. (2014). 공직부패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 및 사업 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1):39-63.
- 차유정·노성훈. (2022).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3(4):39-69.
- 최선우. (2003). 형사사법의 역사성과 체제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006), 16:203-239.
- 최선우. (2006).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211-244.
- 최선우. (2015). 수사구조의 근대성과 미군정기의 수사구조 형성과정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237-264.
- 최선우. (2017). 권력모델에 의한 형사사법 연구-검사의 지위와 역할 중심. 「한국경찰학회보」, 19(1):185-213.
- 최예나. (2021). 부패요인이 정부수준별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패 방지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2):137 -168.
- 윤옥경. (2014).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탐색적 연구. 「교정담론」, 8(2):251-280.
- 홍상우·송수빈·윤태범. (2023). 공직부패 발생요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33(4):73-100.
- 황태연·정규진·이명석. (2019). 사례연구와 과정추적법 (process tracing): 새로 운인과관계 추론논리. 「한국행정학보」, 53(4):119-150.
- Razafindrakoto, M., & Roubaud, F. (2006). Governance, Democracy and Poverty Reduction: Lessons drawn from the 1-2-3 surveys in francophone Africa. African Statistical Journal, 2(2), 43-82.
- Hagan, J., & Albonetti, C. (1982). Race, class, and the perception of criminal injustice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 329-355.
- King, Michael. (2023). The framework of criminal justice. Routledge.
- Melgar, N., Rossi, M., & Smith, T. W. (2010).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120-131.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445-473.

ABSTRACT

A Study of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Seoho Lee

Criminal justice essentially performs a social control function within the dynamics of various social structures. This role entails strict fairness and integrity in response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protecting the democratic order and the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empirically, focusing on factors that cause public corruption, and to derive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policies. The "Survey on the Reality of Public Corruption" was utiliz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causing public corruption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order: corruption control, work environment, and public official personality. Thi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esent differentiated policies according to each corruption factor in conjunction with the ideology of criminal justice.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rom various aspects and provides a specific direction for anti-corruption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at reflect the ideology of proper criminal justice.

【Keywords: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corruption perception, factors causing public corruption, anti-corruption policy】